##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3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·한민수·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 고 있으며, 처리기간·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을 "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
-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인증의 신청 등) ① ~ ③	제22조(인증의 신청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	4
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	
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에게 재심	-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
사를 신청할 수 있다. <u>&lt;후단</u>	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
<u>신설&gt;</u>	<u> 부장관</u>
	<u>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</u>
	장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
	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
	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
	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
	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